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883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장

I 시험장소 및 일시

□ 시험장소 : **【붙임 1】 시험장별 장소 안내 참조**

구 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공 개 경 쟁	소 방	남	10010001 ~ 10010600	동래중학교
			10010601 ~ 10011100	수영중학교
			10011101 ~ 10011284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여	10020001 ~ 10020157	
경 력 경 쟁	구 조	남	30110001 ~ 30110085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구 급	남	30210001 ~ 30210180	
		여	30220001 ~ 30220179	
	건 축	남	30510001 ~ 30510009	

※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타 시험장 절대 응시 불가)

□ 시험일시 : 2018. 4. 7.(토) 10:00 ~

○ 공개경쟁 : 10:00 ~ 11:40 (100분) / 5과목 100문제

○ 경력경쟁 : 10:00 ~ 11:00 (60분) / 3과목 60문제

Ⅱ 응시자 준수사항 (09:20부터 응시자 교육 실시)

□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09:30 각 시험장 현관 폐쇄 ⇒ 입실 불가**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 특히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공개경쟁)**와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경력경쟁)**의 경우 학교명이 유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 차량을 비롯한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 접수완료 후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전 구역은 **균연**이며 평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므로 시험과 상관없는 시험실 내의 물건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10분전)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등)는 **사용 불가**합니다.
-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2018. 4. 6.)까지** 자격증 등 가산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 및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 득점은 OM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 ◑ ◒ ◓ ◔ ◕ ◖ ◗ ◘ ◙ ◚ ◛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의 일치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필기시험 문제지 표지 양식 참조**
 - 공개경쟁시험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답안을 표기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시험 응시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제지 통합편철**에 따라 계급별·분야별 응시과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편철순서
공 개 경 쟁	- 필수(3과목) : ① 국어 ② 한국사 ③ 영어 - 선택(2과목) : ④ 소방학개론 ⑤ 행정법총론 ⑥ 소방관계법규 ⑦ 사회 ⑧ 과학 ⑨ 수학
경 력 경 쟁	- 필수(3과목) : ① 국어 ② 생활영어 ③ 소방학개론 ④ 소방관계법규 ⑤ 영어 ※ 소방사 (3과목) : ① 국어 ② 생활영어 ③ 소방학개론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본 공고문, 시험당일 안내(방송)하는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Ⅲ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는 부산광역시(<http://www.busan.go.kr>) 홈페이지(시험정보) 및 부산소방안전본부(<http://119.busan.go.kr>)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정보)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 : 2018. 4. 24.(화) 10:00
- 필기시험성적은 불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불합격자의 성적확인은 최종합격자 발표시(2018. 6. 26. 예정) 안내하는 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760-3018)

- 【붙임】**
1. 필기시험 장소별 안내 1부.
 2. 채용분야별 문제지 표지 양식 1부.